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제2호다목1)의 재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9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를 “금강본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외한다)중”을 “제외한다) 중”으로,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를 각각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영 제21조제2항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이란 해당 상수원관
리지역에 거주기간이 가장 긴 1명을 말한다.

별지 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① ----- -----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u>제2호다</u> 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1. ----- ----- ----- <u>제2호다</u> 목1)의 재배방법----- ---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u>아니할 것</u>	2. ----- <u>않을</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u> 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3. <u>금강본류</u> ----- ----- ----- ----- -----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분류 의 경계로부터 <u>1천5백미터</u> <u>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u> <u>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u> <u>이내의 지역</u>	가. ----- ----- ----- <u>1킬로미터</u> - ----- ----- -----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분류 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u>지역 또는 제1지류</u> <u>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u> <u>내의 지역</u>	나. ----- ----- ----- ----- <u>지역</u>
다.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 관리지역을 <u>제외한다</u>)중 금강분류의 경계로부터 1 킬로미터 이내의 <u>지역 또</u> <u>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u> <u>5백미터 이내의 지역</u>	다. ----- ----- <u>제외한다</u>) 중 - ----- ----- <u>지역</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위원회(이하 “위원</u> <u>회”라 한다)가 금강수계의 상</u> 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	5. ----- <u>위원회</u> ----- ----- ----- ----- -----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① -----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
 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
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
 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
 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
 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
 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설치해야 -

 -----.

1. -----
 ----- 적산유
량계(합산유량계)

2. ----- 적산
유량계(합산유량계)

② -----

 ----- 보존해
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영 제21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이
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
기간이 가장 긴 1명을 말한다.